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351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한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수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44,739,6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739,6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15.부터 2018. 6. 15.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C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66,37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9. 10. 이 법원 2018가단221857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8. 12. 11. 'C는 원고에게 38,946,089원과 그 중 38,666,377원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2. 27. 4,000,000원, 2019. 5. 29. 6,162,420원을 지급받았으나, C로부터는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C는 2018. 8. 14.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8. 17. 접수 제66625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2016. 3. 3. 접수 제20370호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0.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15.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8. 14.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425,752,950원이었던 반면, C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38,666,337원 외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80,842,500원,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32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2018년 소득금액이 149,011,964원에 달하였고, E, F 둔산 대리점 사업장을 각 운영하였으며, C가 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주식회사 G 주식 7,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G 주식 9,000주를 이전받아 위 회사 발행 주식 17,000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 주식은 1주의 금액이 5,000원으로서 7,000주 보유 시 그 가액은 35,000,000원, 17,000주 보유 시 가액은 8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소득금액만이나 C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자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는 원고와 같은 소속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8. 4.부터 2018. 11. 사이에만 하여도 위 회사를 상대로 53건의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위 53건의 소송이 모두 원고들 청구 인용으로 확정된 점, 위 회사는 2018년 영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 주식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도 피고는 그 증거로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였을 뿐인바(그 중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주식회사 G이다) C가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을 제1, 2,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 11. 20. C와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둔 사실, 피고와 C는 대전가정법원 2018호협268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8. 11. 2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와 C는 2018. 8. 10.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G 주식은 C에게 이전하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 2명의 양육비 명목으로 이전하며, 이혼 이후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는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그 외 C와 피고의 재산은 2018. 8. 10. 현재 명의대로 그대로 유

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그 재산분할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갑 제4,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425,752,950원이고, 이 사건 부

동산에는 피담보채무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액 약 375,000,000원인 대전 서구 H아파트 I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는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합계 119,508,83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와 C의 혼인생활이 약 25년간 지속된 사정, 피고가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C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파탄 경위, 나이, 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주식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 결과 피고는 위 H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C는 그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게 된 반면 별 가치가 없는 주식회사 G 주식만을 보유하게 된 결과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피고 명의인 위 H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C의 배우자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4,737,629원[= 33,738,088원¹⁾ × {1 + 230/365(= 2019. 5. 30. 부터 2021. 1. 14.까지)} × 20%]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 105,752,96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25,752,96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특별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피담보채무액 320,000,000원]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44,737,629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44,737,6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4,737,6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1) 1. 근로복지공단이 2018. 12. 27. 지급한 4,000,000원 변제총당 : 38,946,089원 + 38,666,377원에 대한 2018.9.22.부터 2018. 12. 27.까지 연 20% 지연손해금 2,055,144원 - 4,000,000원 = 37,001,233원
2. 근로복지공단이 2019. 5. 29. 지급한 6,162,420원 변제총당 : 37,001,233원 + 37,001,233원에 대한 2018. 12. 28.부터 2019. 5. 29.까지 연 20% 지연손해금 2,899,275원 - 6,162,420원 = 33,738,088원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별지

부동산목록

1. 대전 유성구 J 대 209m²

2. 대전 유성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시멘트벽돌,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층 15.45m²

1층 93.24m²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4.86m². 끝.